

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1회 경력직(일반계약직) 공개채용 재공고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 등 공개

화성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모집공고) 제5항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2026년 제1회 경력직(일반계약직) 공개채용 재공고』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 등을 공개합니다.

□ 채용전형별 진행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전형일	최종합격자 발 표
		전형일	합격자 발 표	시험일	합격자 발 표		
'26.04.24.	'26.04.24. ~ '26.05.06.	'26.05.11.	'26.05.14.	'26.05.16.	'26.05.21.	'26.05.28.	'26.06.10.

□ 전형별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

(단위: 명)

채용직별	채용직급	채용 인원 (명)	접수 인원 (명)	경쟁률	서류전형		인·적성 전형		면접전형		최종 합격 (명)	예비 합격 (명)
					합격 인원 (명)	합격선 (점)	합격 인원 (명)	합격선 (점)	합격 인원 (명)	합격선 (점)		
합계		2명	0명	0.00 : 1	0	-	0	-	0	-	0	-
공개 경쟁	행정 (재무회계)	1명	0명	0.00 : 1	-	-	-	-	-	-	-	-
	일반 계약직 나급	1명	0명	0.00 : 1	-	-	-	-	-	-	-	-
	행정 (노무행정)	1명	0명	0.00 : 1	-	-	-	-	-	-	-	-

※ 1차 전형(서류 전형) 합격자 없음에 따른 채용전형 종료

※ 인·적성 전형 합격선(총평점)은 인성평균 및 직무평균의 평균점수로, 해당 응시자의 점수가 해당 합격선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필터링 기준(신뢰도, 허구반응, 인성주목 항목 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전형별 채용절차

○ 1차(서류)전형

- 관련분야 경력, 전공, 자격증, 법정가점 등에 대해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여부·서류전형을 통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2차(인적성)전형

- 인성, 직무능력, 직무적성 등을 측정하며 인성검사 결과(신뢰도 및 허구반응 등)가 부적격이거나, 보통 등급 미만자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3차(면접)전형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력,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개별면접)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보통(70점)” 이상인자 선발
(※ 면접위원 과반수 이상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미흡” 이하로 평정 시 불합격)

○ 가산점 부여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30%이내)의 경우만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에 각각 5% 또는 10%씩 가산
- 나. 우수자원봉사자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제4항 및 [별표6] 나호의 기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가산점 부여(※ 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부여)

구 분	자 격 기 준	배점
금 장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300시간 이상인 자	5
은 장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200시간 이상인 자	4
동 장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100시간 이상인 자	3
해바라기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누적 30시간 이상인 자	2
기 타	이하 봉사활동	1

○ 최종합격자 결정

- 경력공채(일반직) : 서류전형 50% 및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 결정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4조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은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서류전형(필기전형을 시행하는 경우 필기전형) 성적 우수자
 3. 면접전형 성적 우수자
 4. 자격증 소지자

○ 예비합격자 결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되, 직렬별 채용인원을 고려하여 직렬별 인원을 산정하며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비합격자는 차점자순으로 함(유효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